

「협동조합법」 어렵지 않아요 (「협동조합기본법」 해설서)

(6) 사회적협동조합

이대중 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장

*본 글은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리포트에 격주 연재됩니다.

www.center4se.org

● 6. 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인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노블리스)은 그에 합당한 책임(오블리제)을 다한다’는 의미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는 아직까지 사회지도층의 책임의식과 자세를 생각하게 한다. 이 같은 가치는 영국 귀족과 사회지도층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 영국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의 정문을 들어서면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참전하여 전사한 그 학교 동문들의 이름을 기록한 기념비를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찰스 다윈, 과학자 뉴턴, 윈스턴 처칠 등과 역사적인 거물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를 먼저 기억하는 모습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훌륭한 학자와 학문적인 성과를 나왔는지보다,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자신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를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진정한 학문과 교육의 가치와 진리를 돌아보게 하는 덕목이다.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보이는 영국왕실,
아프칸전에 참전한 왕위서열 3위 Harry왕자, 결혼식때 군복을 입는 William왕자]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분명 영어가 아닌 불어 용어다. 그런데 왜 그 용어가 사회적책임을 중시하는 영국사회의 일부가 되었을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유래는 영국과 프랑스간의 치열했던 “백년전쟁”이 벌어진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다.

백년전쟁 당시 프랑스의 북부도시 ‘칼레’는 영국군에게 포위당한다. (참고로 칼레는 영국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도 하다.) 칼레는 영국군의 수차례 거센 공격을 막아내지만, 더 이상 파리로부터 원병을 지원받지 못해 결국 항복을 하게 된다. 당시 영국군은 칼

레 시민들의 결사적인 항전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본 상황이었다. 마침내 도시를 구하기 위해 칼레시는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에게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는 항복사절단을 보낸다. 에드워드 3세는 “항복은 받아들이고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지만, 누군가가 그 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도시의 6명은 목을 매 처형 받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게 되었다.

칼레시민들은 큰 혼란에 처했다. ‘누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가? 과연 어떤 순서로 처형자를 선발해야 하는가?’ 등으로 도시 전체가 또 다른 혼란으로 빠져가는 상황에서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Eustache de St Pierre)’가 처형을 자청하였다. 이어서 칼레의 시장, 부자 상인, 변호사 등 칼레에서 가장 명성 있는 인사 6명이 먼저 책임을 다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이다. 다음날 칼레의 시민 6명은 마을을 구하기 위해 처형을 기다리며 교수대 앞에 모였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이들의 사연을 듣게 된 영국 왕비는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에드워드 3세에 6명의 목숨을 간청하였다. 바로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여섯 명의 희생정신에 감복하였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해 기록되고 지금까지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인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상징이 되었다고 한다.



[책임을 다한 6명의 프랑스 칼레시민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 영국 의사당앞 공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고,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14세기 유럽에서 칼레의 6명 이야기는 회자되고 회자되어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공원에는 이들을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비록 당시에는 적군이었지만 6명의 젊은 프랑스인들이 보여준 용기와 책임의식을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중 하나가 CSR 이라고 불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다. 원래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하여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나

누어주는 것이 목표이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기업은 이익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1)관련 법령을 지키고, (2)윤리적인 경영을 하며, (3)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4)기업의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구축하고 (5)사회공익적인 기능을 먼저 생각하는 개념 있는 기업이 되자는 것이 CSR의 요지가 될 것 같다.

(1)1인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2)공동의 소유, (3)수익배분 보다는 내부유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 (4)지역사회공헌, (5)조합원간의 상부상조에 기여 등을 기업의 가치와 우선목표로 삼고 있는 협동조합에서 CSR이 처음 시작되었고 여러 기업들로 확산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 같은 협동조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조한 비영리법인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도입하였다. **큰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재생,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의 공익적인 기능과 의무를 부과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세계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미덕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기업이다. 기업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기업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책임이 강조된 기업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협동조합 보다 공익성이 한층 강화된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비영리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에만 비영리법인격을 부여해 왔는데, 앞으로 일정한 경제활동도 가능한 새로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단위 : 개, %)

합계	종교	학술·장학·자선	사회복지	학교	의료	문화	기타
26,517	16,414	2,732	2,505	1,749	452	451	2,214
(100.0)	(61.9)	(10.3)	(9.4)	(6.6)	(1.7)	(1.7)	(8.4)

[표 6-1 :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현황(2007)]

먼저 지금까지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있다. 2007년 자료에 따르면 2만개가 넘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교회·성당·사찰 등과 같은 종교단체, 종합병원, 사립학교, 사회복지시설, 고아원, 어린이집 등이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이다.

유형	설립근거 법령	관리주체
종교	민법	문화부
문화	민법	개별(주무관청)
학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별(주무관청)
장학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자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복지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부
의료	의료법, 정신보건법	복지부
학교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부
기타	특별법	개별

[표 6-2 : 우리나라 비영리법인 유형별 설립근거법령 및 관리주체]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종교단체와 사단법인은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각종 학술단체와 자산단체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법」 그리고 「의료법」, 「초·중·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에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제공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먼 기관들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기존의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 장애인·고령자·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고, 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공익적으로 경영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업이 비영리법인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법제는 설립목적에 중심을 두었지, 실제적인 운영방식과 사회환원등의 결과를 보아서 비영리법인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2007년 「사회적기업법」이 마련되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는 것이 최대한의 정책적 배려였다.

제2조 정의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93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p>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p>②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p>

【표 6-3 :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93조】

앞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비영리분야의 영역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왜냐하면 「협동조합기본법」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조직인 협동조합도 공익적인 사업을 40% 이상 수행하면,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경제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슨 의미일까?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 따라 협동조합 중 (1)지역경제 활성화, (2)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3)정부 위탁사업 등을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수행하면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는 2012년 12월 1일부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

므로, 이 같은 사회적협동조합 요건을 충족하면 고아원, 양로원, 복지시설 이외에도 비영리 법인격을 지닌 슈퍼마켓, 식당, 카페, 정비소, 세차장 등이 생겨날 수 있다.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그것이 문제이다. 협동조합으로 할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할지? 간병인 10명이 모여서 '간병인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자. 모두가 공정하게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정관을 만들고, 일정의 출자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협동조합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 바로 법인격 선택의 고민이다. 이번에는 두 개의 협동조합 모델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각각 살펴보자.

(1) 같은 점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1)최소설립인원 5인, (2)1인1표의 민주적인 의결권, (3)조합원자격요건, (4)가능한 사업, (5)회계, 등기 등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동일하다. 사실상 운영과 절차, 방식에서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다.

(2) 다른 점

첫째,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비해 공익적인 가치와 목적을 더 강조한다. 기본법 제2조 3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여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을 강조한다.

둘째, 협동조합은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는 반면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 중에 법령에서 명시한 공익적사업을 40%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설립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가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르다.

셋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배당이 금지**되며, 인가를 받은 행정기관의 감독의 대상이 된다. 또한 **청산 시에도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잔여재산을 국고, 유사단체, 협회 다른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잉여금의 적립금 규모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의 10% 보다 높은 30%를 적립**해야 한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실익제고 목적	<목적>	(추가로) 조합원 실익제고 및 지역주민, 취약계층 복리증진 목적
사실상 사업범위 제한 없음 -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공동으로 영위	<사업>	사업범위 제한 없음. 주사업 40% -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시도지사의 설립신고	<설립>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인가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	<배당>	이익영여금 배당 금지
별다른 혜택 없음	<혜택>	비영리법인에 준하여 검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조세이외의 부과금의 면세
잉여금의 10/100 적립	<적립>	잉여금의 30/100 적립
정부지원 및 감독 없음	<감독>	정부지원 가능성 있음 업무 감독 및 감독상 명령 가능
정관에 따라 청산 가능	<청산>	잔여재산 국고 등으로 환수 등
법인	<법인격>	비영리법인

[표 6-4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넷째, 사회적협동조합은 부가적인 의무와 책임은 발생하지만 비영리법인격을 갖게 됨에 따라 국세, 지방세, 부과금 상에서 기존 비영리법인들이 갖는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조세 이외에는 각종의 부과금은 면제가 될 수 있고, 현재 조세상의 큰 혜택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중이다.

끝으로, 앞선 질문과 물음에 대한 나름의 답을 드린다면, 어떤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운영할지의 여부는 10명의 간병인들이 모여 두 개의 협동조합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높다면, 일반 협동조합이 적합하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VS.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차이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받은 질문이다. 사회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적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개는 엄격히 다른 제도와 내용이다.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앞에 등장한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구분	회 사 (주식·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 단 법 인
근거법	상 법	협동조합기본법		민법
사업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공익
의결권	1주1표 (단, 합자회사는 1인1표)	1인1표		1인1표
설립방식	설립신고	신고	인가	인가
성격	물적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 영 리 법 인 >		< 비 영 리 법 인 >	
	사 회 적 기 업 (고용노동부 인증제도)			

[표 6-5 :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교]

사회적협동조합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을 지칭하지만, 사회적기업은 법인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이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인증을 받게 된다. 기업이나 사단법인이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①경영컨설팅, ②공공기관 우선구매, ③인건비, 시설비, 사업개발비 지원, ④모태펀드 제공 등의 혜택을 5년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나누어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는 680개의 인증 사회적기업과 1,000여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활동 중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인증범주에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향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겨날 전망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와 방법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부터 제88조, 그리고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제4장(협동조합 설립)의 내용과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도 크게 8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①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여 ② 정관을 작성하고 ③ 설립동의를 모집하여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을 거친 후 ④ 설립인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제출한 후 ⑤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고 ⑥ 출자금을 납입한 후 ⑦ 설립등기를 관할 등기서에 제출하는 단계를 거치면 ⑧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인격 부여받게 된다.



[표 6-6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8단계]

일반 협동조합과 다른 유일한 설립절차는 4번이다. 시·도지사 설립신고 대신에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요청하는 것이다. 설립인가를 접수받은 중앙부처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6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에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령에 따라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표 6-7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

협동조합의 알파요 오메가인 원리와 원칙은 바로 자주, 자율, 자립이다. 외부요인에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공동의 과제와 필요를 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자율적인 조직에 감독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하여 감독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감독규정을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하여 두는 결정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먼저 법제정의 취지는 자율적인 협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모델을 확산하는 것이므로, 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지나친 국가의 감독은 배제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감독이 부재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었다.

실제 오랜 협동조합 역사를 지닌 유럽 경우에도 가짜 협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협동조합의 숫자가 천개, 만개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감독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다. 끝으로 다른 비영리법인은 설립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감독의 사각지대로 비추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권한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사회적협동조합 업무 및 재산, 장부, 서류 등에 대한 검사권, ▲법령, 정관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권, ▲조사·검사·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그리고 ▲설립인가 취소권이다.

제111조 감독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2조 설립인가의 취소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표 6-8 :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협동조합기본법」 제111조, 112조]

업무재산등에 대한 검사권한은 (1)설립인가 및 절차 위반여부, (2)법령,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 위반여부, (3)사회적협동조합 사업관련 법령 위반여부 등의 3가지에 한하여 가능하고, 설립인가의 취소는 (1)설립인가를 받고도 1년 동안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례, (2)2회 이상 시정명령 미이행 하는 사례, (3)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 (4)추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사례에 한하여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문을 실시하여 충분한 의견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